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 제 안 설 명

□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우형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생활 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은 점차 다양화·복합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 중심의 감시와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활동 중인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이들 감시단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청소년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청소년유해환경과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정의를 신설했고, 안 제14조의3을 신설해 시장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